■ 경력단절 여성 고용 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일몰)

구 분	요 건
(1) 취 지	임신·출산이나 육아의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육아 휴직자의 복직을 지원하기 위함이다.
(2)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대한세액공제	1) 요 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이하에서 "경력 단절 여성"이라 함)과 2022년 12월 31일까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이 하에서 "재고용"이라 함)하는 경우이어야 한다.
	① 해당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중분류를 기준으로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함)한 후 결혼·임신·출산·육아 및 자녀교육의 사유로 퇴직하였을 것 ② 위 ①에 따른 사유로 퇴직한 날부터 2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을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과세특례 내용 고용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경력단절 여성에게 지급 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 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액 = 고용 후 2년간 지급한 인건비×30%(중견기업은 15%)
(3)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1) 요 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에서 "육아 휴직 복귀자"라 함)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경우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① 해당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하였을 것 ② 육아휴직한 경우로서 육아휴직 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일 것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나 그와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2) 세액공제 복직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30%(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세액공제액 = 복직 후 1년간 지급한 인건비×30%(중견기업은 15%)
	* 육아휴직자 복직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는 육아휴직 복귀자의 자녀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적용함
	3) 사후관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기업이 해당 기업에 복직한 날부터 1년이 지 나기 전에 해당 육아휴직 복귀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근로관계 가 종료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공제받은 세액에 상 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